

[붙임 2] 제출 서류 안내

※ 모든 신청자는 아래 제출 서류 외에도 '자격증 교부 신청서'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시오.

구분	조건	번호	급종	제출 서류
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	대학(원)에서 복수전공 또는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	1번	2급	①졸업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
	대학에서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	2번	3급	①졸업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
	대학(원)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복수전공 또는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	3번	2급	①졸업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
	대학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영의 별표1에 따른 부전공의 학위를 취득한 자	4번	3급	①졸업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
	800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	5번	3급	경력증명서 원본(국립국어원 소정 양식)
	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	6번	3급	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)
	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,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	7번	3급	①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
	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에 이수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	8번	3급	①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
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	대학(원)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복수전공 또는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	9번	2급	①졸업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
	대학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부전공의 학위를 취득한 자	10번	3급	①졸업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
	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	11번	3급	①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이수증명서 원본(국립국어원 소정 양식) ③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
	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	12번	1급	경력증명서 원본(국립국어원 소정 양식)
	한국어교원 3급인 자(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)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	13번	2급	경력증명서 원본(국립국어원 소정 양식)
	한국어교원 3급인 자(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자)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	14번	2급	경력증명서 원본(국립국어원 소정 양식)